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3110
----------	-------

제출연월일 : 2025. 9. 18.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15호, 제18호, 제24호, 제25호, 제37호, 제82호, 제89호부터 제91호까지, 제106호, 제107호, 제153호, 제188호, 제190호, 제206호 및 제2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3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2033. 12. 31.

	46조의8	사용허가등	
10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0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9.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8.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국유·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을 “개정규정(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제21조”를 “제21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제105조의 개정규정(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65,574백만원

구 분 \ 연 도		(단위: 억원)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5호)		추	정	곤	란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15호)		추정	곤란				
	○ 국립공원공단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18호)	△6	△6	△6	△6	△6	△30	△6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24호)	△314	△314	△314	△314	△314	△1,570	△314
	○ 지역자활센터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25호)	△13	△13	△13			△39	△13
	○ 한국소년보호협회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	△160	△160	△160	△160	△160	△800	△160

한 연장(\$4 관련 별표 제82호)							
○ 산업단지개발 사 업시행자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존 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89호)		추	정	곤	란		
○ 임대전용산업단 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 표 제90호)		추	정	곤	란		
○ 도시첨단산업단 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 표 제91호)		추	정	곤	란		
○ 소재·부품·장비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 업에 대한 사용 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 (\$4 관련 별표 제 106호)		추정	곤란				
○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 구기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연장 (\$4 관련 별표 제 107호)		추정	곤란				
○ 창업보육센터 입 주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 기한 연장(\$4 관 련 별표 제153호)	△2,227	△2,227	△2,227	△2,227	△2,227	△11,135	△2,227
○ 한국과학진흥재 단 사용료등 감 면 특례 존속기 한 연장(\$4 관련 별표 제190호)		추	정	곤	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206호)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10,400
○ 국내복귀기업 사용료등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관련 별표 제214호)		추정	곤란				
소 계(B)	△13,120	△13,120	△13,120	△13,107	△13,107	△65,574	△13,120
총 비용(A-B)	13,120	13,120	13,120	13,107	13,107	65,574	13,12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4조 관련 별표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2	제4조 관련 별표 제1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3	제4조 관련 별표 제18호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4	제4조 관련 별표 제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6)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5	제4조 관련 별표 제2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6	제4조 관련 별표 제82호 (보호소년 등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7	제4조 관련 별표 제8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8	제4조 관련 별표 제9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임대용전용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9	제4조 관련 별표 제9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0	제4조 관련 별표 제10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1	제4조 관련 별표 제107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2	제4조 관련 별표 제153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3	제4조 관련 별표 제190호 (한국과학진흥재단법 제16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한국과학진흥재단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4	제4조 관련 별표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15	제4조 관련 별표 제21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25년말 존속기한 종료 예정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 됨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4조 관련 별표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	제4조 관련 별표 제1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3	제4조 관련 별표 제18호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	
4	제4조 관련 별표 제2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	
5	제4조 관련 별표 제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6	제4조 관련 별표 제82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	
7	제4조 관련 별표 제8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8	제4조 관련 별표 제9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9	제4조 관련 별표 제9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0	제4조 관련 별표 제10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1	제4조 관련 별표 제107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망 안정화를 위한 특 별조치법 제48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2	제4조 관련 별표 제15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	
13	제4조 관련 별표 제190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4	제4조 관련 별표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	
15	제4조 관련 별표 제21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3조의2 및 제13 조의3)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5.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 '25년말 적용기한 종료 예정인 §4조 관련 별표 제5호, 제15호, 제18호, 제24호, 제25호,
제82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제106호, 제107호, 제153호, 제190호, 제206호, 제214
호의 규정은 '25년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향후 세수 증가가 발생하나, 적용기
한을 연장함에 따라 세수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가하지 않을 세수를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 존속
기한 연장(§4 별표 제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5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국립공원공단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8호)

○ 세수감 : △30백만원

- △6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30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24호)

○ 세수감 : △1,570백만원

- △314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1,570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지역자활센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25호)

○ 세수감 : △39백만원

- △13백만원* × 3년(일몰 연장기간) = △39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한국소년보호협회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82호)

○ 세수감 : △800백만원

- △160백만원* × 5년(일몰 연장기간) = △800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89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9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91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소재·부품·장비 실증시험 또는 실증시험 시설개방 수요기업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06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07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53호)

○ 세수감 : △11,135백만원

- $\Delta 2,227\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Delta 11,135\text{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190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206호)

○ 세수감 : △52,000백만원

- $\Delta 10,400\text{백만원}^* \times 5\text{년(일몰 연장기간)} = \Delta 52,000\text{백만원}$

* '26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6년 예상 감면액(추정)

□ 국내복귀기업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존속기한 연장(§4 별표 제214호)

○ 세수감 : 추정곤란

-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심의관	국장
오성태	마용재	고종안	황순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오성태	044-215-5252	ost1357@korea.kr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료등의 감면 효율화, 특례 운용·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Ⅳ. 부대의견

-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 ☐ 성명

사무관	과장	심의관	국장
오성태	마용재	고종안	황순관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오성태	044-215-5252	ost1357@korea.kr